프랑스의 농업회의소

해외농업 시리즈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프랑스의 농업회의소

1. 농업회의소 논의 배경

농업정책이 농업 및 농촌 현실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민 및 농촌주민들의 지속적인 농정참여와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스의 농업회의소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무엇보다 농업회의소라는 제도가 갖는 다음과 같은 독창적인 특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농업회의소는 국가로부터 인정된 공식적인 농민대표기구이다. 즉 농업회의소는 임의기구나 농민들에 의한 자생조직이 아니라, 그 설립이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일종의 공공조직이다.

둘째, 농업회의소는 공식화된 농정자문기구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셋째, 농업회의소는 자체의 고유한 기능 및 사업으로 농촌지도 · 상담과 직업교육, 그리고 농촌관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즉, 농업회의소는 민간부문으로 위탁 내지 민영화가 가능한 국가사업을 애초부터 자체사업으로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나라 농업에서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제도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자료집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조직 및 운영체계와 농업 및 농촌사회에서 농업회의소가 수행하는 역할을 밝히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2. 농업 현황

지형과 입지조건

프랑스는 동부 국경지대와 중부 산악지대를 제외하면 거의 평지인 국토를 가지고 있고, 기후적으로도 해양성 온대기후에 속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대하천들이 국토를 흐르고 토지도 비옥하여 유럽에서 대농업국으로 발전해 왔다. 국토 모양은 6각형에 가까우며, 3면은 바다로 3면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쪽은 이탈리아 · 스위스 · 독일, 북동쪽은 룩셈부르크 · 벨기에와 접해 있고, 북서쪽은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과 마주하며, 서쪽은 대서양, 남쪽은 지중해와 스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국토면적은 544,000km²로 영국의 2.5배, 이탈리아의 1.8배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유럽 최대의 국가이다.

- 정식국가명칭 : La République Française
- 면　　적 : 544,000km² (한반도 면적의 약 2.5배)
- 기　　후 : 대부분 지역이 온대성 기후 (남부지방은 지중해성 기후)
- 수　　도 : 파리 (Paris)
- 인　　구 : 6,007만명 (2005년)
- 민　　족 : Gaul족 (켈트족에 라틴족과 게르만족이 융합된 민족)
- 언　　어 : 프랑스어
- 종　　교 : 인구의 90% 가톨릭
- 정부형태 : 의회제를 가미한 대통령 중심제
- 국가원수 : 대통령 사르코지, 2007년 5월 취임 (5년 임기)
- 입 법 부 : 양원제 (상원 321석, 하원 577석)

농경지 면적은 2,963만ha로 국토면적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고, 임야면적이 1,550만ha로 국토의 약 28%가 된다. 입지적으로 북부의 파리 분지는 모든 종류의 경작에 적합한 충적토양으로 곡물, 두류, 사탕무우 등 산업용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서부지역은 젖소, 양 등 가축류가 사육되는 목초지대이고, 남부지역은 포도를 포함한 과실류 등 원예작물 재배지이며, 지중해 연안에서 지중해성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현황

2005년 현재 프랑스 전체 농업경영체 수는 54만 5천 개소로 1988년의 101만 7천 개소에서 17년 동안 약 절반(46.4%)이 감소했다.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농업경영단위인

'전문농업경영체'(Exploitation professionnelle, 이하 전문농)[1] 수도 같은 기간 동안 57만 개소에서 34만 7천 개소로 39.1%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문농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같은 기간 동안 전문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56.0%에서 63.7%로 상승하였다〈표 1〉.

표 1. 프랑스의 농업경영체 현황

단위: 천 개소

구 분	1988	2000	2005
농업경영체 수(A)	1,017	664	545
전문농 수(B)	570	394	347
B/A	56.0%	59.3%	63.7%

자료: Agrest primeur(2006), [김수석 · 박석두(2006), p. 81에서 재인용]

표 2. 전문농의 경영규모별 분포

단위: 개소, %

구 분	2000	2003	2005
20 ha 이하	84,295 (21.4)	73,209 (19.9)	66,667 (19.2)
20~50 ha	115,869 (29.4)	98,809 (26.9)	88,237 (25.5)
50~100 ha	116,639 (29.6)	112,618 (30.7)	106,461 (30.7)
100~200 ha	62,971 (16.0)	66,974 (18.2)	68,342 (19.7)
200ha 이상	14,136 (3.6)	15,563 (4.3)	16,822 (4.9)
계	393,910 (100.)	367,173 (100)	346,529 (100)

자료: Agrest primeur(2006)

1) 전문농업경영체(Exploitations professinnelles)란 최소한의 영농규모, 즉 최소 8 ESU와 3/4 AWU를 보유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활동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영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여기서 ESU는 유럽농업경영체규모단위(European Size Unit)로서 1 ESU는 1,200유로 또는 1.5ha의 밀 경작규모에 해당하는 농업경영단위이고, AWU는 연간노동단위(Annual Work Unit)로서 일년 동안 농업경영체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성인어른 노동 1단위를 가리킨다.

농업활동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전문농의 경영규모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경영규모가 50ha 미만 농업경영체의 수와 비중이 완만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100ha 이상 농업경영체는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어 경영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2〉.

품목별로는 곡물생산경영체 수가 전체 전문농의 22.4%인 7만 7천여 개소로 가장 많고, 낙농경영체 5만 8천여 개소, 포도재배경영체 4만 6천여 개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표 3. 품목별 전문농 현황

단위: 개소

품 목	2000	2003	2005
곡 물	85,699	81,424	77,677
채소, 화훼	12,597	11,810	11,118
포 도	49,674	49,236	46,100
과 일	12,187	10,790	10,104
젖 소	70,408	64,975	58,348
육 우	42,352	41,032	40,534
기타 초식동물	34,455	31,348	29,044
양돈, 가금	16,128	16,346	14,881
기 타	70,410	60,212	58,723
계	393,910	367,173	346,529

자료: Agrest primeur(2006)

농업생산

주요 농산물은 밀 · 보리 · 옥수수 · 감자 · 사탕무우 · 포도주 · 낙농제품 등이며, 특히 포도주 생산은 세계 제1위이다. 또한 넓은 목초지를 보유하고 있어 소와 말 사육을

비롯한 축산업이 활발하며, 국토의 약 30%에 달하는 임야에서 송진 · 테레빈유(식물의 수지를 증류하여 얻는 휘발성 기름) · 목재 · 호두나무 등의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2005년도의 작물생산액은 294억 8천만 유로이고, 축산물생산액은 215억 8천만 유로로 지난 10년간 생산액에 큰 증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4〉.

표 4. 프랑스의 농업생산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구 분	1995	2000	2005
작물 생산	28,742	30,337	29,479
축산물 생산	22,099	22,242	21,582
계	50,841	52,579	51,061

자료: Eurostat(2007), Eurostat yearbook 2006-07

농업소득

프랑스에서 농업노동력당 농업소득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5〉. EU 국가들 중에서 2000년 대비 2005년의 실질농업소득이 감소한 국가로는 프랑스 이외에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있고, 농업소득이 증가한 국가로는 독일과 영국이 있다.

표 5. 주요 EU 국가들의 농업소득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프 랑 스	100.0	100.2	98.4	97.9	96.2	86.6
덴 마 크	100.0	112.5	81.5	77.9	92.2	94.7
네덜란드	100.0	97.9	84.1	89.8	81.2	86.5
이탈리아	100.0	100.4	96.2	97.1	96.3	86.3
독 일	100.0	125.5	92.7	87.0	125.5	121.7
영 국	100.0	106.3	116.2	138.5	127.0	122.5

*2000년을 기준년도로 한 노동력 단위당 실질농업소득지수
자료: Eurostat(2007), Eurostat yearbook 2006-07

한국과의 교역

2005년도 한국의 대 프랑스 수출은 전년 대비 20.0%가 증가한 31억 7천만 달러, 대 프랑스 수입은 11.1% 증가한 2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양국의 총 교역규모는 59억 3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프랑스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계속 유지하다가 2004년 1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05년에는 4억 1천만 달러로 흑자폭이 증가하였다.

표 6. 한국의 대 프랑스 수출입 변화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 출	1,713	1,541	1,629	1,755	2,644	3,172
수 입	2,244	2,092	2,116	2,220	2,483	2,759
무역수지	△530	△551	△487	△465	161	413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농산물은 대 프랑스 수출보다 수입이 압도적인데, 대표적 수입품이 돼지고기와 낙농제품 등의 축산물과 포도주 등의 주류 품목들이다. 2005년에 가축육류의 수입액이 6,500만 달러, 주류의 수입액이 4,2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농산물의 수출총액은 1천만 달러 미만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잎담배이고, 부분적으로 배, 김치, 인삼제품 등이 수출되고 있다.

3. 농민단체 현황

농민단체의 일반적 특성

프랑스 농민단체는 크게 공익기능을 갖는 공공기관 성격의 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되고, 민간조직은 다시 시장활동과 관련된 사업조직과 비사업조직으로 구분된다. 공공 조직으로는 농업관련 전 계층의 참여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농업회의소가 있다. 민간조직으로는 농업협동조합과 농업공제조합, 농업은행 등의 사업조직들이 있고, 비사업조직으로 농민운동단체가 있다. 농업 및 농촌 관련 법과 법령들을 집대성하고 있는 프랑스 농촌법전(Code rural)은 이들 농민단체들을 '농업직능조직'으로 명명하고 있다.

농업직능조직 (OPA: les Organisation Professionnelle Agricoles)

프랑스의 농업직능조직들은 농민운동의 결과 제도화된 것으로 초기에는 농민운동이라는 '운동성'과 협동조합과 같은 사업조직의 '사업성'이 혼재된 상태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농민운동 지도부는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농민운동에서 분리하기로 하고, 농민운동(syndicalisme)은 공권력(중앙과 지방의 정부와 의회)을 상대로 한 활동에만 주력하는 한편, 경제적 활동은 국가와 시장 사이의 사회경제(économie sociale) 영역에서 협동조합형태의 사업조직을 통해 활동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농업직능조직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개 범주로 분류되며, 농업인과 관련업무 종사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방어(la défense): 농민운동단체(syndicat agricole)

○ 대표(la représentation): 농업회의소(chamber d'agriculture)

○ 경제조직: 농업협동조합

○ 사회보장: 농업공제조합(mutualité sociale agricole)

○ 금융: 농업은행(crédit agricole)

이들 5개 농업직능조직 범주 가운데 농업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기획하고 자문하는 역할은 농민운동단체(방어)와 농업회의소(대표)가 맡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프랑스 국내뿐만 아니라 EU 공동농업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1. 프랑스 농업직능조직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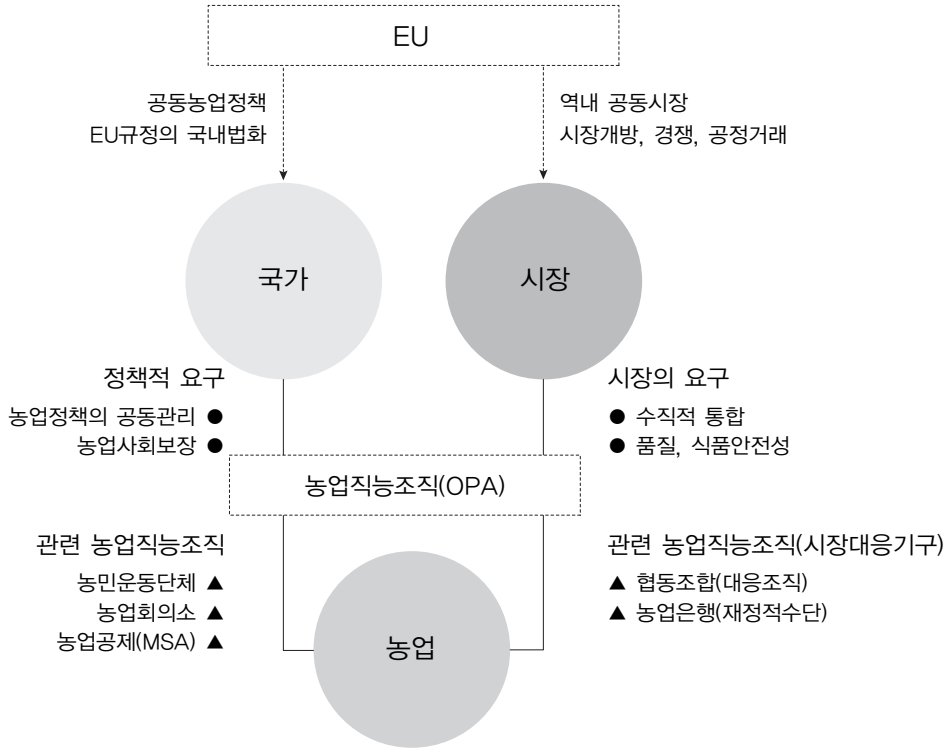

자료: 오현석(2005), p. 120

4. 농업회의소(Chambre d'Agriculture)의 역사[2)]

설립과정

프랑스에서 농업회의소의 설립은 1924년 관련법이 제정되고 농업회의소 구성을 위한 첫 선거가 치러진 1927년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19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1854년과 1919년 두 차례에 걸쳐 농업회의소 관련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때 농업회의소 설치를 상공회의소에 준하는 조직으로서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봉건제가 후퇴하면서 새로운 신흥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공인들의 상공회의소에 대응해 농업계도 공식적인 직능대표기구(système de représentation publique des agriculteurs)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19세기 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854년 지주들과 신흥 농업자본가들의 정치력을 배경으로 농업회의소 관련법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영국과의 무역조례를 정치적 과제로 안고 있던 나폴레옹 3세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들어 광범위하게 확산된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농민단체의 출현을 보게 되었고 이는 20세기 초 농업회의소의 설립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곡물가격의 하락과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업인들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여러 형태의 농민운동조직의 결성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협동조합과 농업은행, 농업공제조합 등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직능조직을 건설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

2) 이 장은 오현석(1998), 김수석 · 박현태(2004) 및 오현석 등(2005)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이처럼 농업회의소는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농민운동의 발전과 농업인들에 의한 경제적 직능조직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농업계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공적 대의기구를 건설하자는 오래된 사상은 농업계 내부의 이견 조율과 함께 1924년 관련법의 제정으로 실현되었다.

역사적 발전과정

1924년에 설립된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① 제1단계: 농업회의소 정립 단계 (1924~1940)

② 제2단계: 농업회의소 강제해산 단계 (1941~1948)

③ 제3단계: 농업기술보급 주력 단계 (1949~1965)

④ 제4단계: 농업개발 주력 단계 (1966~1980)

⑤ 제5단계: 농업 · 농촌개발 주력 단계 (1981~현재)

(1) 농업회의소 정립 단계 (1924~1940)

이 기간은 농업회의소의 구성과 조직, 재정에 관한 기본틀이 마련된 시기이다. 농업계의 이해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민주적 대의제를 구성원리로 채택하였다. 농민들의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거구(arrondissement)당 4명의 대의원과 농업협동조합, 농민운동단체 등 농업직능조직의 대표를 도 농업회의소의 대의원으로 구성하여 전국 94개 도에 농업회의소가 설치되었다. 1927년 농업회의소 구성을 위한 첫 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졌으며 법제정에서 회의소 구성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국가보조를 유일한 재정수입으로 하였다. 농업회의소가 구성된 직후인 1928년에는 예산법에 '비건축용 토지소유세에 대한 일정 비

율의 부가세'를 농업회의소 재정으로 쓰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1929년부터는 자동적으로 정부가 징수하는 관련 세수의 일부를 운영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회의소의 이와 같은 재정확보방식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1935년에는 그동안 중앙정치무대인 파리에서 비공식적으로 유지해 온 도농업회의소 의장모임이 농업회의소의장 상설의회(APPCA)라는 명칭으로 농업회의소의 전국기구로서 법적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상공회의소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의 교섭력을 갖게 되었다.

(2) 농업회의소 강제해산 단계 (1941~1948)

농업회의소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나치의 괴뢰정권인 비쉬(Vichy)정부에 의해 여타 농민단체들과 함께 강제로 해산되게 된다. 대신에 비쉬정부는 농민동업자조합(Corporation paysanne)이라는 관변단체를 조직하여 이를 유일한 합법적 농민단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독일의 패전과 함께 이 조직은 해체되고 농업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e l'Agriculture, CGA)이라는 새로운 단일조직이 출범했다.

(3) 농업기술보급 주력 단계 (1949~1965)

농업총연맹(CGA)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이 농업회의소의 재건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1949년에 과거의 도농업회의소와 농업회의소 중앙기구인 APPCA가 법적으로 부활하게 된다. 1950년대와 60년대 전반기는 전후 복구와 국가적인 농업근대화사업 추진으로 농업회의소의 활동이 매우 활발히 전개된 시기이다. 무엇보다 농촌지도사업을 통한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민교육훈련이 농업회의소를 통해 이뤄지면서 농업회의소는 농업근대화의 첨병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9년에는 법제정을 통해 도농업회의소에 농촌지도사업을 전담하는 기구(SAU/Service d'Unité Agricole)가 설치되고 도 단위의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농업회의소의 농정활동은 1960/62년 농업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한층 강화되는데, 농업기본법은 각종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의회 등)들이 농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농업회의소의 자문을 반드시 구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농업회의소의 농정자문활동을 제도화했다.

(4) 농업개발 주력 단계 (1966~1980)

1966년 개발된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농촌지도사업과 함께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진보'를 농촌지역에 파급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농업개발관련 법령(détrêt no. 66-744)이 제정되면서 '농업개발'은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의된다. 즉 농업개발을 가져오는 농촌지도사업은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영역에서 농업과 농민의 발전을 유발하고, 농민 스스로 경영체와 경영환경을 통솔하고 이를 통해 농업소득과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 때부터 프랑스 농정당국은 '농업개발'을 농업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설정해 농산물에 부과하는 조세를 토대로 '농업개발기금'을 창설하고, 전국농업개발협회(Association Nationale de Développment Agricole, ANDA)라는 공적 기능을 가진 민간조직을 설립해 농업개발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농업회의소는 ANDA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지역단위의 농업개발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농업회의소의 지도사업조직은 도단위의 농업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개별 농업개발사업체들이 수행하는 농업개발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고 재정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EU 역내 농업시장의 개방 확대와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농업생산영역은 점차로 생산자단체인 농업협동조합과 농식품제조업체 중심으로 재구성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회의소의 농업개발사업은 점차 이들

민간조직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5) 농업 · 농촌개발 주력 단계 (1981~현재)

1980년대 초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화정책이 강하게 추진된다. 이와 함께 프랑스의 지역개발정책이 6년 단위의 '국가-지역계획 계약' (les contrats de plan Etat-Région) 형태로 실시되면서 농업회의소의 농업개발계획도 이와 같은 지역계획체계 내에서 수립되게 된다.

나아가 농업회의소는 1988년 농가의 농촌관광활동을 '농업활동'으로 정의한 법령이 제정됨을 계기로 농촌관광을 조직화한 사업체인 '농업과 관광'(agriculture et tourism)을 새로이 구성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서비스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Bienvenue à la ferme, BAF) 사업에 착수했다.

이처럼 농업회의소가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까지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시책은 선구적이었는데, 이것은 차후에 EU와 프랑스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즉 1999년 EU의 Agenda 2000 개혁안에서 농촌개발이 공동농업정책의 제2의 축으로 인정받게 되고, 2002년 프랑스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조직이었던 전국농업개발협회(ANDA)를 정부 산하 조직인 '농업 · 농촌개발기구'(L'Agence de développment agricole et rural, ADAR)로 재편하여 농업 · 농촌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농업회의소의 구성에도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이 시기에 나타났다. 1982년 농업회의소 구성을 위한 대의원선출 방식이 다수득표자 당선에서 리스트 투표(Scrutin de liste)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농업계 내의 다양한 계층들의 의사를 보다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 7. 프랑스 농업회의소 연표

연 도	주 요 내 용
1851/1919	• 두 차례에 걸쳐 농업회의소 관련법안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함
1924	• 농업회의소 설치법 제정
1927	• 첫 농업회의소 의원선거
1935	• 농업회의소의장 상설의회(APPCA)가 중앙정치무대인 파리에 설치됨 (경영자연맹과 상업회의소 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전국조직을 형성)
1940	• 나치독일 점령기간중 강제 해산
1949	• 전후 농업회의소 조직과 기능의 회복
1952	• 재탄생 이후 첫 농업회의소 의원선거
1954	• 지역간 농업회의소 발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균형기금 설치
1959	• 농촌지도 서비스 개시 (농업기술자 200명 고용)
1959	• 농업회의소 재정확보에 대한 법적 제한 완화
1966	• 농업회의소에 농업개발 서비스기구(농촌지도사업과)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농업개발계획을 총괄 조정 · 관리하는 기능이 부여됨
1966	• 정부가 각 도에 축산전문기관을 설립하면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을 도농업회의소의 기구형태로 구성
1968	• 농업회의소의장 상설의회(APPCA)를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PCA)로 개칭
1969	• 도농업회의소 선거인단이 3개(농업경영자와 그 가족, 농업노동자, 지주)에서 5개로 늘어남(은퇴농업인과 농업직능단체직원추가)
1969	• 도농업회의소의 지역단위 협의기구인 '지역 농업회의소'가 공공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중앙의 농업회의소 상설의회, 기초조직인 도농업회의소와 함께 3단계 계통조직형태를 취함
1982	• 도농업회의소 구성을 계층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면서 각 도의 구성이 동일하게 됨
1988	• 농촌관광사업(BAF)을 농업회의소의 농촌개발사업으로 시작
2002	• 농업 · 농촌개발기구(ADAR)에 의한 농촌개발사업 활성화 유도

5. 조 직

법적 성격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농업 · 농촌관계법을 모은 농촌법전(Code rural)과 농업기본법(Loi d'orientation agricole)에 의거하여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924년 농업회의소법은 '공공기관(Pouvoir public)을 상대로 농업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행하는 법적 자문기구(Conseils légaux)' 로서 농업회의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Etablissememt public)에 관한 법률을 통해 농업회의소의 공공기관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1960년 농업기본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농업회의소의 자문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직체계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94개 도농업회의소를 기초조직으로, 연합체 성격의 21개 지역농업회의소와 중앙조직인 1개의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ssemblée Permanente des Chambres d'Agriculture, APCA)가 구성되어 있다. 도보다 광역단위인 지역농업회의소는 1980년대 들어 사회당 정부 하에 추진된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도와 중앙정부 사이에 '지역(region)'이라는 광역자치단체가 구성되면서 지역에 속한 여러 도농업회의소가 연합체를 만들어 이를 상대로 농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그림 2. 프랑스 농업회의소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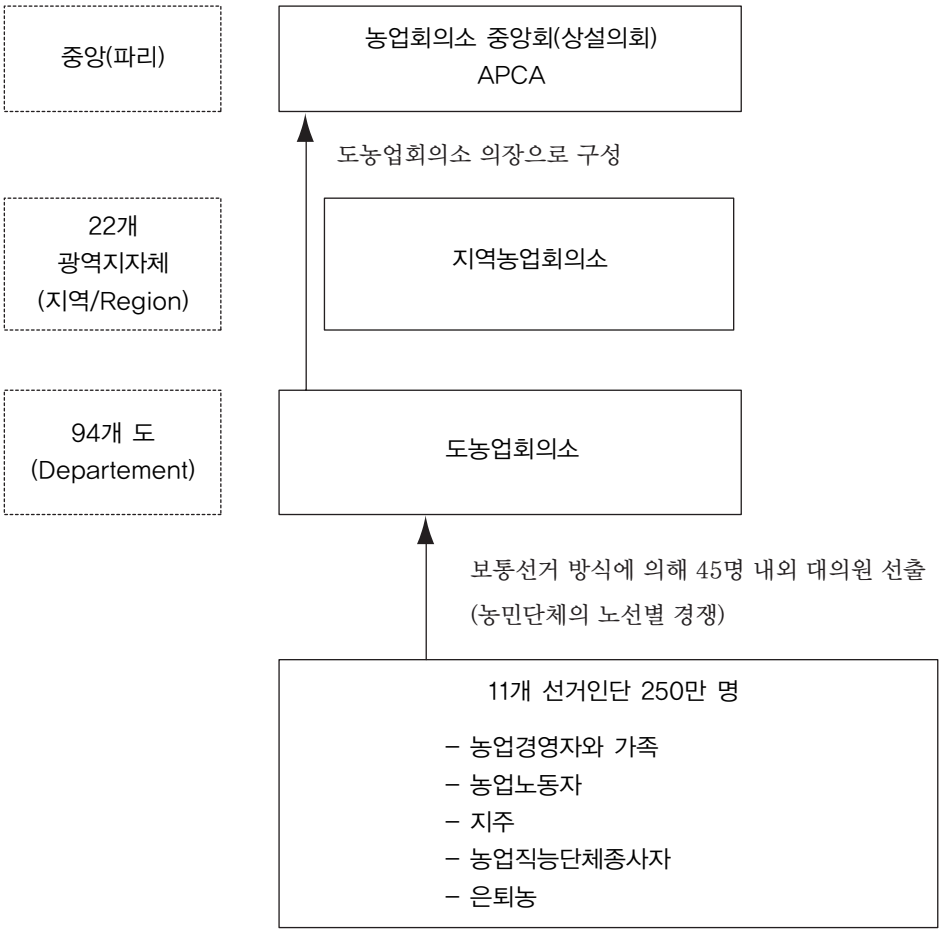

자료: 오현석(2005), p. 128

기초 단위인 도농업회의소는 비례대표제에 따라 농업계 내 각 그룹별 선거인단의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으로 구성되며, 지역농업회의소와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PCA)는 각 도 농업회의소의 의장들로 구성된다. 〈그림 2〉는 계통별 농업회의소가 지방행정 단계에서 상대하는 공공기관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는 약 36,000여 개의 코뮨을 기초자치단체로 해서 94개의 도, 22개의 지역이

지방행정체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농업회의소는 도 단계서부터 조직되어 있다. 국가기구인 중앙정부의 농림부 조직이 지역과 도에 농업국을 설치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계통별로 분담한 농업회의소의 역할을 보면, 도농업회의소가 농업개발, 기술지도, 교육훈련, 지역개발, 농업정보 및 관광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지역농업회의소는 지역의 농업경제조사 및 연구, 지역농산물의 시장개척과 생산조정, 연구개발 등을 전담하고 있다. 농업회의소 중앙회인 상설의회는 중앙정부와 상하원, 유럽연합, 유럽의회 등을 상대로 한 농업정책 자문과 EU 등 국제기구에서의 농업논의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한다.

도농업회의소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기초조직은 도농업회의소로 되어 있다. 농업회의소 설립과 재정에 관한 법령들이 도농업회의소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고, 주요 사업인 농업 · 농촌개발업무가 도농업회의소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회의소와 농민들의 접촉은 도농업회의소를 통해 이뤄진다. 전국 94개 도에 설치된 도농업회의소의 현황을 보면 약 4,200명의 농업회의소 대의원과 6,80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 중에는 농업기술지도 분야 종사자가 직원 전체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계획 분야인데, 이를 통해 농업회의소가 지역개발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농업회의소는 회의소당 평균 45명 내외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농업경영자 그룹이 절반에 가까운 21석을 차지해 회의소 내 최대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농업회의소 의원선출은 각 그룹별로 11개의 선거인단을 조직해 보통 및 비밀투표로 이뤄진다. 그룹별 선거인수는 개략적으로 농업경영자와 가족구성원(배우자와 농업종사가

구원) 68%, 농업직능조직(농업은행, 협동조합 등) 종사자와 농업노동자 11%,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지주 9%, 은퇴농민 12%로 구성돼 있다. 전체 선거인 수는 2백50만 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농민운동단체와 협동조합, 농업금융단체, 공제조합 등 5만여 농업관련 직능단체의 기초조직이 포함된다. 대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선거를 실시해 대의원의 절반을 교체한다.

〈Eure et loire 도농업회의소 운영 사례〉

○ 대의원 구성: 총 45명
(농업경영자 21명, 지주 3명, 농업노동자 4명, 은퇴농 2명, 농업직능조직 종사자 15명)

○ 이사회 구성: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중 9명 선출

○ 총회: 연 3회 개최

○ 직원수: 66명 (이 중 2/3는 농업지도사 및 전문가, 1/3은 관리직)

○ 연간 예산: 5억 3,600만 유로

○ 예산 구성: 비건축용 토지세 57%, 교육 및 서비스 수수료 17%, 직영농장 판매 수입 5%, 지역개발사업 5%, 기타 보조 6%

○ 기능
-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을 상대로 농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문 기능
- 농민들을 상대로 한 기술 및 경영 상담과 교육, 농촌관광 네트워크 (Bienvenue à la ferme) 관리

○ 사업부서
(관리 및 회계,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농촌개발 및 정비, 농업법인 컨설팅 및 관리, 환경농업, 축산)

자료: 오현석 등(2005)

도농업회의소는 비건축용 토지에 대한 토지세를 주수입원으로 하고, 농업 ·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와 자체사업수익을 부차적인 수입으로 하고 있다. 즉 토지세 수입이 농업회의소 전체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산물거래에서 생산자 부담으로 조성되는 농업개발기금(Fonds National de Développememt Agricole, FNDA)중 일부와 축산지도사업 및 직업훈련 등 농업회의소 대행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농업회의소 자체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토지세는 임차지의 경우 소유자가 선부담하고 수확 후 임차인이 50%를 분담한다.

도농업회의소 예산안은 도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농림부와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다.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PCA)

APCA는 94명의 도농업회의소 의장으로 구성되며 지역농업회의소 의장은 여기서 제외된다. 상설의회 의장은 현직 도농업회의소 의장 가운데서 선출된다. 의장은 사무국을 대표하며 3명의 부의장과 1명의 사무국장을 두고 있다. 이밖에 도농업회의소 의장의 중앙 농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위원회(농업경제 및 식품산업위원회, 농촌공간위원회, 농기업위원회, 국제관계위원회), 연락위원회(농업개발 연락위원회, 축산발전 연락위원회, 농업교육연락위원회), 특정계층의 이해증진을 위한 특별연구조직을 두고 있다.

농업회의소 상설의회의 수입은 총회에서 결정된 도농업회의소의 분담금을 통해 충당된다. 총회에서 가결된 예산안은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PCA의 예산의 특징은 균형기금(Fonds national de péréquation)의 운영인데, APCA는 재정자립이 어려운 도에 필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는 농업회의소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일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 기금은 매년 총회에서 개별 도농업회의소별 분담금을 정함으로써 조성된다.

6. 역할과 기능

도농업회의소 활동

도농업회의소의 활동은 농정자문활동과 자체사업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대개 도의 각종 자문위원회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반면 후자는 직업훈련사업 등 예산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1) 농정자문활동

농정참여활동은 농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농림부의 지방사무소인 도농업국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농정참여 내용은 도·농업관련 기관으로부터의 농정자문에 대한 의견 개진에서부터 도·농업구조 기본계획, 농산물시장 조직, 수렵지 결정, 녹화사업, 방목지 임대료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밖에 도농업회의소는 도의 농지임대차 자문위원회, 토지정비위원회, 직업교육 및 고용문제위원회, 수송위원회, 재해감정위원회, 농업개발위원회 등에 참여해 농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2) 지도사업 및 직업교육훈련

프랑스에서 농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수행해 오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은 1960년대 초의 단순 농업기술보급(vulgarisation agricole)에서 지역농업개발(développement agricole)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있다. 도농업회의소의 농업개발조직은 경종부문(SUDA)과 축산부문(EDE)으로 나뉘며 전문인력(conseil agricole)을 자체적으로 충원하고 있다. 도농업회의소의 농업개발조직은 작물적응시험을 위한 시험농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의 농업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회의소는 농업경영회계센터, 농업협동조합, 농업교육기관, 전문생산자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농업기술지도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어 지역농업의 개발 센터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도농업회의소는 이밖에도 정부의 각종 농업인력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농업적응교육을 비롯해 신규 창업과 후계자 선정에 필수적 코스인 현장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자 평생교육, 농업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교육 등의 직업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3) 농촌관광사업

도시민들에게 농업회의소는 무엇보다도 농촌관광과 관련돼 있다. 관광업이 프랑스의 최대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녹색관광(tourisme vert)으로 불리는 농촌관광은 전체 관광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도농업회의소는 농촌관광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는 일을 주관하고 있다. 프랑스는 관광부의 주관하에 오래 전부터 농촌주택을 중급 호텔로 개조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농촌을 찾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 수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어 농촌관광의 국제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농업회의소가 농촌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관광 관련 정보를 농가에 보급하는 것과 유기농업을 통한 틈새시장전략을 개발하는 것, 관광농원과 승마, 요트, 야영 등의 부대시설을 개발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농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BAF(농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4) 단체교섭

도농업회의소는 또한 농민들의 각종 민원에 대한 단체교섭 역할을 맡고 있다. 토목건설공사에 따른 농지보상문제와 농업재해시의 보상문제 등 농민들의 단체교섭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농업회의소가 이를 맡고 있다.

⑸ 기타

이밖에도 도농업회의소는 도의 농업관련 통계작성과 분석 등 농업관련 경제자료를 수집 · 분석하고 있으며 도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설의회(APCA) 기능

도농업회의소 의장들로 구성된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PCA)는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농업관련 자문기구이다. 그런데 정부가 주요 농정현안을 놓고 협의를 벌이는 대상은 APCA가 아닌 다른 조직들이다. 이는 흔히 농업계 4대 조직으로 불려지는 전국농업경영자연맹(FNSEA), 전국농민후계자연합회(CNJA),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PCA), 전국농업공제금융협동조합연합회(CNMCCA)들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정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은 농민운동단체인 FNSEA와 CNJA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회의소 상설의회의 농정활동은 농촌토지정비회사(SAFER), 농업경영구조개선센터(CNASEA) 등 농업관련 기관과 농업재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대한 공식 참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도 농업회의소 상설의회는 유럽연합과 OECD, FAO, WTO 등 국제기구에서 프랑스 농업계를 대표하는 민간기구로 활동하고 있으며, COPA(EU농업단체연합회), FIPA(국제농업생산자단체연합), CEA(유럽농업연맹) 등 국제농업단체 모임에서 프랑스 농업계를 대표하고 있다.

농업회의소 상설의회는 농정활동 홍보를 위해 L'Opinion Agricole(1966년 창간, 격월간, 농업관련기관에 농업정보 제공), Chambres d'Agriculture(1929년 창간, 월간, 매호 주요이슈 특집구성), Conjoncture Agricole(1983년 창간, 월간, 농산물 시장정보제공) 등과 같은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농촌관광과 관련해서는 APCA에 '농업과 관광(agriculture et tourisme)'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업과 관광' 사무국은 BAF(농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

다) 사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등록상표인 BAF 마크(해바라기 마크/INPI 등록)의 가치향상을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사무국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3)]

- ㅇ 새로운 농촌관광상품의 개발
- ㅇ BAF 농촌관광상품의 품질관리규약 제정 및 감독(숙박, 승마, 가족체류, 캠핑, 농가음식체험, 농가특산물직판, 사냥, 어린이 농사체험, 교육)
- ㅇ 농림부 및 관광부, 국토개발청(DATAR)과 공동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서비스 향상 연구의 수행
- ㅇ 농촌관광 관련 법안의 제안(관련규정, 세제, 사회보장제도 등)
- ㅇ 농촌관광 전문지침서(rfrences technico-economiques)의 발행
- ㅇ 기타 BAF 농촌관광 홍보활동
- ㅇ BAF 오픈데이(Portes Ouvertes-Bienvenue la ferme : 매년 봄 바캉스 기간을 앞두고 BAF 농가를 일반 대중에게 개방)
- ㅇ 전국, 지역, 도 별 BAF 안내책자 매년 발행(250만 부)
- ㅇ 인터넷 사이트 www.bienvenue-a-la-ferme.com 운영

7.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성과와 시사점

성과와 한계

설립되어 활동한 지 80여 년을 경과하고 있는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농업국가의 전통을 여전히 긍지로 여기는 프랑스 사회에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새롭게 요구될 때마다 그러한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산업화과정에 벌어져 가는 농촌과 도시의 간

3) 오현석 등(2005), p. 139 참조.

극을 좁히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프랑스에서 농업회의소는 농업과 관련된 개별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차원을 넘어서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산되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점에서 농업회의소의 사회적 기여도는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운영상의 문제로 수입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과중한 인건비로 인해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주요 수입원인 토지세 수입은 토지가격의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농업회의소의 주요 활동인 농업개발 등 기술지도사업이 농자재 관련산업의 진출로 인해 전문화경쟁이 심화되면서 농업회의소의 농촌지도사업이 농민들로부터 점차 외면 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축산과 시설원예 분야의 기술지도는 관련자재 공급회사들의 기술력이 농업회의소보다 질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농업회의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농업개발 관련 인력과 예산 비중은 여전히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활동이나 공익적 성격의 새로운 활동을 개발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도-지역-중앙 3단계로 조직된 계통조직은 계통별 농업회의소의 역할분담에 있어 많은 혼선을 겪고 있다. 특히 기초조직인 도농업회의소와 중간단계의 지역농업회의소 간의 역할분담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는 농업회의소가 앞으로 새로운 공익적 기능을 개발하면서 이를 계통조직 간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셋째는 농업회의소 활동영역이 국경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 농업정책의 기본틀이 EU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OECD, FAO, 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농업논의가

국내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농업회의소의 활동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사점

프랑스 농업회의소가 우리나라의 농민단체조직 및 농업지도기관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회의소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여러 형태의 농민단체와 농업관련 조직들을 포괄하는 '농업계의 대표' 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대표 기능을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농민단체들과 농업관련 조직들이 있으나, 이들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기구가 없다. 임의조직으로 농민단체협의회 등의 통합조직이 있으나, 농업계의 대표조직이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법적 ·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지 않은 조직에 속한다. 따라서 전체 사회에서 농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 필요한데, 이 조직은 전체 농업인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법적으로 뒷받침된 농업회의소 형태일 때보다 큰 대표성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프랑스의 농업회의소는 농민단체를 포함한 농업관련 NGO의 농정참여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농민(운동)단체의 농정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여론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농민단체의 농정참여를 공식화하고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농정참여가 여전히 형식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다. 프랑스의 농업회의소는 이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다시 말해 농민단체를 포함한 농업관련 NGO의 실질적인 농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공간으로 프랑스식 농업회의소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랑스의 농업회의소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농정참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도농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개발계획과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중시하는 지방분권적 특성을 갖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농민단체는 아직 중앙정부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역적 기초가 약한 상태에 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농업회의소는 우리나라 농민단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관련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참고문헌

김수석. 2005. “독일 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 연구.” 「농업경제연구」제46권 제2호. 한국농업경제학회.

김수석 등. 2002. 「농업 관련 NGO의 농정참여에 관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 박현태. 2004. 「외국 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 박석두. 2006.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진국. 2001. 「유럽연합 농민단체와 농협의 농정활동」. 농협조사부 CEO Focus 제77호.

오현석. 1998. “프랑스 농업회의소 운영실태와 시사점.” 「농민과 사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오현석 등. 2005. 「지방농촌지도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 지역아카데미.

오형범. 2006. 「KIEP Country Profile 프랑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06. 「한농연 프랑스 농민단체 연수보고서」.

APCA(Assmblée Permanente des Chambres d’ Agriculture). 1990. *Chambre d’agriculture*, no. 775.

APCA. 1994. *Les chambres d’agriculture, L’agriculture : une belle entreprise pour la France*, Paris.

Bernadette Gain. 1994. “Les Chambres d’ Agriculture, Soixante dix ans d’ histoire.” *L’Information agricole*. no. 671.

Bernadette Gain. 1994. “Les Chambres d’ Agriculture, Attributiions, régime financier, fonctionnement.” *L’Information agricole*. no. 672.

Campagnes Solidaires. 1994. *Chambres d'Agriculture, Quelques points d' histoire.*

Eurostat. 2007. *Eurostat yearbook 2006-07*, Brussels.

Frohberg K./ P. Weingarten. 1999. *The significance of politics and institutions for the design and form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Kiel.

Isabelle Albouy. 1997. *L'Agriculture de la France,* Eds. Milan.

Schuster, Monica. 2001. Die Gemeinsame Agrarpoltik zwischen Reformzwang und Reformunfähigkeit, Universität Konstanz, Magisterarbeit.

Streek, Wolfgang. 1994. "Staat und Verbände: Neue Frage, Neue Antwort?" W. Streek(hg.), *Staat und Verbände*, Opladen.

부록: BAF(Bienvenue à la ferme / 농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업[4)]

프랑스 농업회의소가 주도하고 있는 BAF는 현업 중인 농업경영체가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의 BAF 활동은 농업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농업회의소의 BAF 사업은 농가의 농촌관광 활동을 농업적 성격으로 규정한 1988년 관련 규정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BAF 사업은 APCA(농업회의소 상설의회)와 FNSEA(전국농업경영인연맹), CNJA(전국청년영농인연맹), CNMCCA(전국농업금융단체연합)가 공동발의해 1988년에 창설되었다.

프랑스 농업계를 대표하는 기구인 농업회의소는 농업관광의 조직화를 위해 중앙(APCA)에 '농업과 관광(agriculture et tourisme)' 사무국을 설치하고 21개 지역, 95개 도의 농업회의소에 '농업과 관광' 팀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회의소 BAF 사업은 36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APCA의 지도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는 '농업과 관광' 사무국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지도위원회에는 농업회의소의 전문가들 외에도 프랑스 최대 농민단체인 FNSEA와 CNJA가 참여하고 있으며, 크레디 아그리꼴과 농업공제조합 등 농업관련 금융기관연합회도 함께 한다.

중앙회의 '농업과 관광' 사무국은 전체 BAF 사업의 기본발전계획을 세우는 한편, 지방의 지역 및 도 농업회의소에 설치된 '농업과 관광' 팀과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농업회의소 중앙회 등록상표인 BAF마크(해바라기 마크/INPI 등록)의 가치향상을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지역 및 도 농업회의소는 BAF 사업의 네트워크관리를 위해 2~3명의 전문지도사 등으로 '농업과 관광' 팀을 구성하고 있다. 지역 및 도 농업회의소는 '농업과 관광' 팀을 통해 BAF 가입대상 농가의 선정, 지방정부 지원알선 및 사업컨설팅, 교육, BAF 품질관리규약의 이행 여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도 BAF 가입

4) 오현석 등(2005), p. 139 이하 재정리.

농가들을 위한 홍보활동과 농지의 농촌관광 용도전환을 위한 대농민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BAF 가입농가 수는 현재 약 4,000여 농가에 달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BAF 농촌관광서비스는 전통음식 체험과 가족단위 숙박, 캠핑 등 3개 분야에서 현재에는 9개 서비스 유형으로 확대되었다. 각각의 농촌관광 서비스는 9개 유형별로 품질헌장(품질관리규약)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농촌관광 서비스는 일반관광 또는 여타 농촌관광 서비스와 차별하고 농가가 수행하는 농촌관광활동의 농업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규약을 통한 농가의 농촌관광 서비스의 농업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세부규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음식 체험의 경우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야만 하며, 예약을 통해서만 고객을 접객해야 하는 등 일반 레스토랑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운영을 해야 한다.

BAF가 품질관리 규약을 통해 정한 9개 유형의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가는 BAF 네트워크 가입과 브랜드 사용을 위해 지역 및 도 농업회의소에 설치된 승인위원회(les commissions d'agrment)에 신청을 해야 하며, 선정된 농가는 BAF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로 제정된 품질관리 규약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관련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BAF의 사업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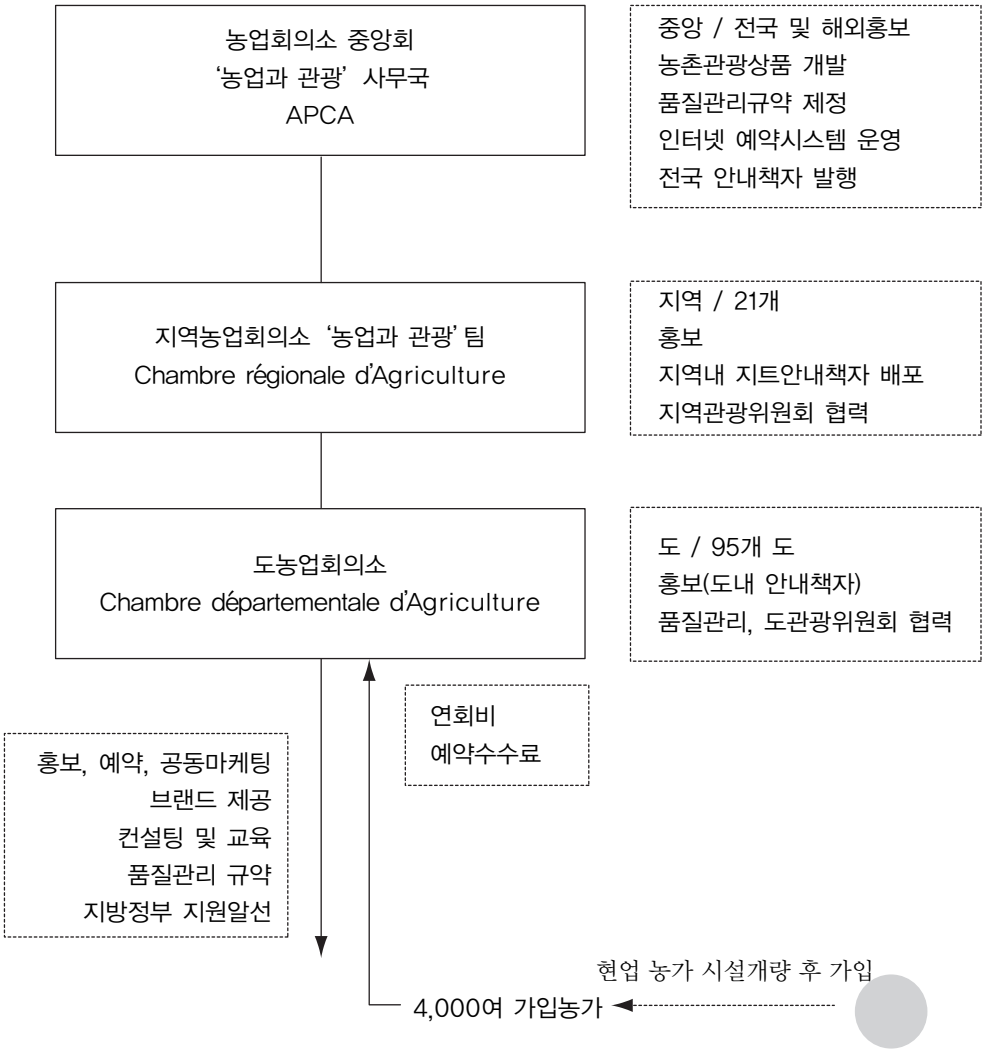
농업회의소 중앙회
'농업과 관광' 사무국
APCA
중앙 / 전국 및 해외홍보
농촌관광상품 개발
품질관리규약 제정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
전국 안내책자 발행
지역농업회의소 '농업과 관광' 팀
Chambre régionale d'Agriculture
지역 / 21개
홍보
지역내 지트안내책자 배포
지역관광위원회 협력
도농업회의소
Chambre départementale d'Agriculture
도 / 95개 도
홍보(도내 안내책자)
품질관리, 도관광위원회 협력
연회비
예약수수료
홍보, 예약, 공동마케팅
브랜드 제공
컨설팅 및 교육
품질관리 규약
지방정부 지원알선
현업 농가 시설개량 후 가입
4,000여 가입농가

〈BAF 아이콘과 농촌관광 상품내용〉

농가음식체험 Les fermes auberges

대부분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재료로 만든 전통음식을 제공

농가시식 Les goters la ferme

농장을 방문하거나 농장에서 레저 활동을 한 후 농가에서 만든 간식을 맛보는 활동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공)

농가특산품직판 Les produits de la ferme

농가를 방문해서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야채나 돼지고기(가공품), 쇠고기, 치즈, 빵 등을 농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구매하는 활동

승마 Les fermes questres

말 사육농가에서 승마교육, 수레달기, 곡마, 승마산책을 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식사 및 숙박이 제공되기도 함

어린이들을 위한 농업교육 Les fermes pdagogiques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과 동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농업활동에 관한 체험교육을 실시함. 이러한 활동을 하는 체험교육 농가들은 교육감독관(l'Inspection d'Acadmie)의 승인을 얻어야 함

농장체험 Les fermes de dcouverte

그룹 방문객인 성인들은 물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환경들에 대해 설명하는 활동을 함

사냥 Les chasses la ferme

농민들이 수렵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대개 식사와 숙박이 함께 제공됨

농가숙박 Les fermes de sjour

주로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농가에서의 숙박과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재료로 한 식사를 함께 제공함. 최대 수용인원은 25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농가부근에서의 캠핑 Les camping en ferme d'accueil

농가 부근에 캠핑 장소를 제공하고, 수용면적은 25개소 미만이며 각각의 면적은 300 제곱미터 이하임

해외농업 시리즈 4
프랑스의 농업회의소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7. 7
발 행 2007. 7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문 원 사
전화 739-3911~5

ISBN 978-89-6013-044-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